

「교육발전」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발전」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발전」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본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위조 및 변조)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본 연구소의 요청이 있을 시 연구자는 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또는 통계처리를 위한 원자료를 연구소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3조(표절)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 (1)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수정(의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2. 자기 자신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자기표절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기술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한, 연구자 고유의 창의물이 아닌 모든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4조(논문저자 표시)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논문 저자는 반드시 다음의 3가지 절차에 기여해야 한다.
 - (1) 논문 설계 구상 또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 · 논문 초고 작성 또는 중요한 내용의 비판적 수정 작업
 - (2) 출판 승인을 위한 최종 버전의 논문
3. 단순한 데이터 수집만은 저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될 수 없다.
4.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논문을 직접 작성한 학생이 제1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모든 논문은 첫 페이지 하단에 저자 정보(성명, 직위, 이메일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

1. 논문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한다.
2.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발생한 시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6조의 조사 단계에 따라 사안을 조사하고, 제7조에 따른 제재 취소 또는 투고 자격 박탈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저자는 논문 투고 시에 연구윤리서약서와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연구부정 행위 조사)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1.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사

(1)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판정

(1)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재)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1. 학술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부정 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 행위 및 게재 취소 사실 공지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4.1.)

2. 이 규정은 2019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7.4.18.)

3.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9.12.20.)